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11437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2050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114372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만

변론 종결2023. 1. 17.

판결 선고2023. 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60,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영업사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5.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사원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B 차장(피고)과 회사(원고) 간의 실적제 계약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2015. 1. 1.부터 2016. 8. 31.까지는 원고의 실적에 대한 분배는 피고 70%, 원고 30%로 정한다. 2016. 9. 1.부터는 피고 60%, 원고 40%로 한다.

2.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사원의 화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 미회수금, 해외 미회수금, Claim, 법인카드 사용 등 제반비용은 영업사원의 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영업사원으로 인한 거래처는 영업사원이 퇴사 시에 가져간다. 단, 회사에서 연결해준 화주이고, 미리 사전에 회사거래처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실적 시 분배는 상기 rule 대로 따른다.

4. 실적에 대한 분배는 급여, 영업비, 차량비용, 퇴직금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세금 및 회사 부담 세금을 포함한다.

3) 원고는 2019. 10. 9.경 피고의 영업 활동을 통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게 87,059,617원 상당의 해상운송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금으로 2019. 10. 24. 21,671,998원, 2019. 10. 25. 11,000,000원, 2020. 1. 6. 5,000,000원, 2020. 1. 8. 6,027,094원, 2020. 5. 7.

3,000,000원 합계 46,699,092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용역대금 40,360,525원(= 87,059,617원 - 46,699,092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1) 4) 피고는 2020. 4. 22.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 2020. 3. 기준 4,300만원 가량으로 액수가 크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코로나 영향으로 원활한 송금 진행이 안 된다. 5월 중순까지 입금 처리해주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답하였고, 2020. 7. 13. 원고에게 "2020. 5. 7. 용역대금 3,000,000원이 입금되어 대략 미수금이 4천 얼마 정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나머지 용역대금 40,360,525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에 2021.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51717호로 이 사건 거래처를 상대로 위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이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원은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거래처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2. 9. 2. 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이 2022. 9.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3, 25, 27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피고가 영업한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용역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 중 40,360,5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360,5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이 분명한 시점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다음날인 2022.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회사인 원고의 손실을 영업사원인 피고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5,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영업사원 계약이지만, 피고는 스스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그 거래처는 피고가 퇴사 시에 가져가는 피고의 영업자산이 되며, 원고의 출퇴근 관리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보다는 영업실적에 따른 수익금 성격의 돈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고는 원고와 사실상 물류주선 영업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가 원고 측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매출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거래처에 대한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그 매출액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게 되고, 피고는 자신의 거래처 관리와 함께 대금 회수 업무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7호증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수익금 분배 후 매출실적에 따른 용역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피고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대금을 피고의 실적 분배금에서 공제해 왔고, 이에 대해 피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실을 영업사원인 피고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 제2조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태원

1)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용역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